

## 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(제28조의2제1항 관련)

### 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.
- 나.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개별기준의 차수 적용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행정처분기준이 경고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회 위반한 것으로 본다.
- 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지정취소(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40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는 제외한다)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.

### 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	법 제50조의2제4항	지정 취소			

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	및 제40조의 3 제 4 항 제1호				
<p>나.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</p> <p>1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또는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</p> <p>2) 그 밖에 업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의 2 제 4 항 및 제40조의 3 제 4 항 제2호</p>	<p>업무 정지 6개월</p>	<p>지정 취소</p>		
<p>다. 법 제50조의2 제 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</p>	<p>법 제50조의 2 제 4 항 및 제40조의 3 제 4 항 제3호</p>	<p>경고</p>	<p>업무 정지 2개월</p>	<p>업무 정지 6개월</p>	<p>지정 취소</p>